

광주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18가단5378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정희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변론 종결2021. 3. 10.

판결 선고2021. 4. 7.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6. 접수 제195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20. 접수 제2060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 11. 20. 접수 제206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5. 5. 1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신축공사를 완성하였다.
- 2) 원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8245호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14. "C은 원고에게 6,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9나25201호)에서는 C이 원고에게 총 2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2020. 11. 18. "C은 원고에게 5,9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또한 원고는 C에게 2016. 11. 20.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60057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28. "C은 원고에게 609,673,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광주고등법원 2019나25591호)하였으나 2020. 10.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8. 1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2018. 11. 20.경 별지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11. 6.경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6. 접수 제195309호로, 2018. 11. 20.경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20. 접수 제206020호로, 같은 날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20. 접수 제20602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합계 6,544,673,583원(= 5,935,000,000원 + 609,673,583원)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C에 대한 위 각 채권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처음 체결한 2018. 11. 1. 당시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1	광주 동구 E 입야 1,748m ² F 입야 495m ²	183,926,000원
2	미분양 아파트 2세대(G호, H호)	588,000,000원
3	분양잔대금 채권	6,576,707,300원) 피고는 발코니 공사대금을 포함한 분양잔대금이 7,486,187,3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13호증의 1 내지 84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이 909,480,000원 상당의 발코니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합계	7,348,633,300	

2)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무	5,935,000,000원
2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609,673,583원
3	원고가 2020. 12. 2. I조합, J조합, K조합에 대위변제함으로써 현실화된 분양대금대출보증채무2) C의 I조합, J조합, K조합에 대한 분양대금대출보증채무 4,474,197,600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였고, I조합, J조합, K조합이 원고와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당시 현실화되었다.	2,170,603,626원
합계	8,715,277,209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C 대표이사 L이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347호(본소), 2014가합8747호(반소)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을 피고의 남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준 것으로서 L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부동산이므로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② 피고는 별지 2, 3 기재 각 부동산을 각 271,671,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각 178,014,000원은 위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M 및 N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고, 나머지 187,314,000원(= 93,657,000원 + 93,657,000원)을 C에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있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의 전 대표이사 L의 동생 O의 배우자로서 C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L이 별지 기재 1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았다가 이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L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C에 2018. 11. 15. 합계 28,580,000원, 2018. 11. 29. 합계 158,734,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잔금 송금일자는 별지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로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가 책임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혜원

별지

1) 피고는 발코니 공사대금을 포함한 분양잔대금이 7,486,187,3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13호증의 1 내지 84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이 909,480,000원 상당의 발코니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C의 I조합, J조합, K조합에 대한 분양대금대출보증채무 4,474,197,600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였고, I조합, J조합, K조합이 원고와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당시 현실화되었다.